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919
----------	-------

발의연월일 : 2026. 5. 11.

발 의 자 : 김대식 · 김용태 · 서일준
김예지 · 윤한홍 · 박덕흠
서지영 · 정성국 · 이철규
조지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의무를 인공지능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고지 또는 표시의 대상을 한정하고 있지 않아 유통 과정의 가공 등으로 인하여 해당 결과물이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이 이용자에게 전달되지 아니하고 사람이 직접 만들거나 실제로 존재하는 정보로 유통될 위험이 있음.

따라서, 해당 결과물 자체에 코드 또는 문자·부호 등을 삽입한 비가시적 또는 가시적 워터마크를 생성하여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생성 사실을 고지·표시하도록 하고, 이와 같은 고지·표시를 훼손 또는 위작·변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인공지능 투명성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제4항 및 제42조제2항 신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전단 중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해당 결과물 자체에 코드 또는 문자·부호 등을 삽입하는 방식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지 또는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④ (생략)
제42조(벌칙) (생략)

<신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42조(벌칙)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
지 또는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
작 또는 변작한 자는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